



제296회 임시회
2010. 12. 16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-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11월 12일
-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8일

3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이 「지식정보자원관리법」, 「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」과 통합되어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으로 개정('09.5.22)
-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('09.11.9)을 기준으로 정보화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적, 제도적 변경사항을 반영

4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
 - “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” → “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”
- 지역정보화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기구 정비(안 제6조)
 - 명 칭 : 지역정보화협의회 → 충청북도지역정보화위원회
 - 위원장 : 도지사 → 행정부지사
-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정보화 환경변화의 반영을 위한 규정 신설
 - 행정, 주민생활, 산업, 복지, 교육,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(안 제8조)
 -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(안 제9조),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사업 근거 마련(안 제15조~제18조)

- 정보화 용역, 유지보수, 보안관리, 보험 등 기존법령과 중복사항 삭제

5. 검토의견

가. 전부개정 동기 및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 등 3개의 법률이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('09.5.22),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('09.11.9)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화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적, 제도적 변경사항을 반영
- 조례 개정의 법적인 근거와 전국 16개 시도중 11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동기와 필요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조례 미개정 시·도(5) : 경기, **충북**, 충남, 경북, 제주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
 -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 제명을 “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”로 하고, “지역정보화협의회”를 “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위원회”로 변경
 -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
 - 정보화 분야를 행정, 주민생활, 산업, 복지, 교육, 문화 등으로 다양하게 명시
 - 정보화를 위한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
 -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“충청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”를 부칙을 통해 폐지하고, 별표의 사용료 징수 기준만 현실에 맞게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로 변경하여 본 조례 별표로 신설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과 정보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문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

첫째, 현행 조례에 의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여부 및 본 조례안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(제4조, 제5조)

둘째, 정보화 관련 각종 지원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(제9조, 제12조, 제14조)

셋째, 도내 농촌주민, 장애인, 고령자, 다문화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

넷째, 신종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 대책

다섯째, 행정정보 제공 관련,

-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징수실적 및 징수 필요성
-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정보 제공 여부 심사에 대한 「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」 준용 가능 여부

여섯째,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사유 및 기계사용료, 전산자료 입력료 등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

일곱째,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사항의 수수료감면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

[참고자료]

타 시·도 조례 개정현황

< 2010. 11. 1 기준 >

시도	개정일자	조례명	위원회 구성			정보화 책임관
			위원회명	위원자	위원수	
서울	2010.1.7	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	정보화 전략위원회	행정1부시장	31이내	정보화기획단장
부산	2010.3.31	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	정보화위원회	정책 기획 실 장	25이내	정보화 총괄부서장
대구	2010.6.30	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	정보화 추진위원회	행정부시장	20이내	정보화업무총괄 실·국장
인천	2010.4.26	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	정보화위원회	행정부시장	20이내	-
광주	2010.8.5	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	정보화위원회	행정부시장	22이내	기획조정실장
대전	2010.8.13	대전광역시 정보화 조례	정보화위원회	실·국장 중 호선	30이내	-(소위원회)
울산	2010.9.30	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	정보화위원회	실·국장	20이내	실·국장
경기	-	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				
강원	2010.5.7	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	지역정보화위원 회	행정부지사	20이내	정보화부서장
충북	-	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				
충남	-	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				
전북	2010.7.9	전라북도 정보화 조례	정보화위원회	행정부지사	25이하	행정지원관
전남	2010.8.13	전라남도 정보화 조례	정보화협의회	기획조정실장	30이내	기획조정실장
경북	-	경상북도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조례				
경남	2010.4.29	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	지역 정보 화 추진 위원 회	행정부지사	20이내	기획조정실장
제주	-	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				

※ 조례 미개정 : 5개시도(경기, 충북, 충남, 경북, 제주)